문서번호	복지정책과-5537
결재일자	2016.5.9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	복지정책과장	착記광	
김수경	이용철	박성도	05/09 <b>박형중</b>	
협 조				

## 2016년 2/4분기 동(洞)복지협의체 신규위원 위촉계획

2016. 5.

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

## 2016년 2/4분기 동(洞)복지협의체 신규위원 위촉계획

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복지자원 발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인 성북구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를 위해 변동위원정비에 따른 신규위촉위원 위촉식을 개최 하여 더 촘촘한 지역의 인적안전망 강화 및 참여와 나눔 복지공동체를 구현하 고자 함.

### │. 근 거

- 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법률 제41조
- 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
- □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(제1093호)

## Ⅱ.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현황

□ 위원현황 : 20개동 458명 (2016.3월)

	복지분야	교		종교		사업가	통	사회	복지 분	분야 관	련자	당연직
합계	전문가	육	교회	사찰	기타	(의료)	반 장	봉사 단체	시민 단체	공공	기타	(공무원)
458	44	20	45	16	6	130	36	47	1	30	39	44

※ 당연직: 44인(동장, 보건복지지원팀장 - 공무원 재직기간)

- □ 구성인원 : 동별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
- □ 위촉권자 : 구청장(동장이 추천)
- □ 위촉대상
  -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  -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·법인·단체· 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

-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- ○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
- 복지통장, 주민자치위원, 자원봉사단체 구성원
-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

#### □ 기 능

-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대상자 발굴
-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
- 지역보호체계 구축·운영 등
-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#### □ 임 원 진

- 위 원 장 : 2명(공동위원장 동장, 민간위원장)
- 부위원장 : 1명
  - ※ 민간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

#### □ 임 기

- 위원장 : 2년, 1회에 한하여 연임
- 위 원 : 2년, 연임 가능
  - ※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.
- □ 회의개최 : 연 6회 이상(2015년 회의 개최실적 : 118회)
- □ 자문위원 : 동협의체에서 5명 이하의 자문위원을 위촉

## Ⅲ. 위원 위(해)촉 정비

- □ 정비대상 :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민간위원
- □ 정비방법
  - 임기만료 및 활동이 저조한 위원 위·해촉
  - 동별 40명까지 위원수 증원(다양한 분야의 위원으로 신규위촉)
  - 2/4분기 신규위촉대상 위원 명단 제출

#### □ 위(해)촉방법

- 신규위촉 : 동장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(승락서 징구)
- 해 축 : 해촉사유 발생시 연임포기 의사 확인후 동장 요청으로 해촉

※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제13조

○ 재 위 촉 : 연임 대상위원 연임의사 확인후 위촉

□1/4분기 위·해촉 현황

○ 1/4분기 신규위촉 위원현황 : 총 36명

(단위 : 명)

합계	성 북	삼 선	동 선	돈 암 1	돈 암 2	안 암	보 만	정 릉 1	정 릉 2	정 릉 3	정 릉 4	길 음 1	길 음 2	종 암	월 구 1	월 곡 2	장 위 1	장 위 2	장 위 3	석 관 동
36	-	-	-	2	_	1	2	1	2	_	1	ı	4	5	1	6	3	7	1	-

○ 1/4분기 해촉 위원현황 : 총 29명

(단위: 명)

합계	성 북	삼 선	동선	돈 암 1	돈 암 2	안 암	보 문	정 릉 1	정 릉 2	정 릉 3	정 릉 4	길 음 1	길 음 2	종 암	월 곡 1	월 곡 2	장 위 1	장 위 2	장 위 3	석 관 동
29	_	_	_	2	2	-	_	2	2	_	-	_	5	ı	1	3	1	4	7	_

□ 위촉식 개최 : 분기별 신규위원 위촉식 개최 예정

## Ⅳ. 신규위원 위촉식 및 정례회의 개최

□ 동 복지협의체 신규위원 위촉식 개최

○ 일 시: 2016. 5.26.(목) 16:00

○ 장 소:미래기획실

○ 참석대상 : 동 복지협의체 신규위촉 위원

○ 위촉권자 : 구청장

○ 행사내용 : 신규위촉 위원 위촉장 수여

□ 동 복지협의체위원장협의회 역량강화 교육

○ 일 시: 2016. 5.26.(목) 16:20~

○ 장 소 : 미래기획실

○ 참석대상 : 각 동 복지협의체위원장 20명 및 신규위촉위원등

○ 교 육

- 강 사: (사)부천희망재단 김범용 상임이사(한국지역재단협의회 운영위원장)

- 내 용 : 세상을 바꾸는 힘! 지역재단이란 무엇인가? 「부천희망재단의 도전」

○ 교육방법 : 외부전문가 강의후 자문등

#### □ 진행순서

시 간	소요시간	행사내용	비고
16:00 ~ 16:05	5′	개 회	사 회 자
16:05 ~ 16:15	10′	위촉장 수여	구 청 장
16:15 ~ 16:20	5´	인사 말씀	구청장 등
16:20 ~ 17:20	60′	강의 : 지역을바꾸는힘 지역재단이란무엇인가?	부천희망재단 김범용:상임이사
17:20 ~ 17:50	30′	정례회의	협의회장
17:50 ~ 17:55	5′	폐 회	사 회 자

#### □ 동 복지협의체위원장협의회 정례회의 개최

○ 일 시: 2016. 5.26.(목) 17:20

○ 장 소 : 미래기획실

○ 참석대상 : 각 동 복지협의체위원장 20명

○ 회의내용

- 각 동협의체 활동사항 공유 및 2016년 공통사업 논의

- 2016년도 동 복지협의체 활성화방안 논의 등

## ∨. 소요예산

□ 정례회의 및 위촉식 : 980천원

○ 참석수당 : 20명 × 30,000원 = 600천원

○ 간담회비 : 50명 × 3,000원 = 150천원

○ 강 사 료 : 1명 × 230,000원 = 230천원(일반1급 강사료 지급기준)

○ 예산과목 : 취약계층지원 및 복지증진, 지역복지전문성강화, 지역사회

복지협의체운영, 일반운영비, 사무관리비

## Ⅵ. 행정사항

□ 각 동장은 동협의체 신규위원 위촉 대상자 추천 : 2016. 5.18.한
□ 각 동 동복지협의체 신규위원 위촉식 참석안내 및 동복지협의체 위원장월계회의 참석안내(위원장 불참시 대리 참석자 참석안내)
□ 위원 변동에 따른 각 위원의 임기 관리 철저, 특히 동 복지협의체위원장의 임기만료일 확인하여 재위촉 또는 신규위원장 선임 준비
□ 각 동 복지협의체 행사동향등 위원장협의회 회의자료 제출 요망
□ 추후 임기만료자(재위촉 또는 해촉) 및 신규위촉자 발생시 분기별 보고 및 위촉장 전수식 개최, 전달(동주민센터) 예정

# 위촉장

소속:

성명: 님

귀하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00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으 로 위촉합니다.

2016년 5월 일

성북구청장 김 영 배

## 승 낙 서

성	명	주민등록번호						
주	소							
직	업		전화번호	집 핸드폰 이메일				

상기 본인은 성북구 ○○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 원으로 위촉됨을 승낙합니다.

2016년 월 일

승 낙 자 : (인)

성북구청장 귀하